

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25일
신청인	상호명 (법인명)		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성명 (대표자명)			생년월일	
	주소				
	전화번호 (팩스번호)			전자우편주소(홈페이지)	
시험을 하려는 항목 종전에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		변경 전		변경 후	
[] 지정요건 변경 [] 시험항목 변경					
변경사유					
비고					

「어선법 시행규칙」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(뒤쪽)

첨부서류	1. 기관의 연혁, 설립 목적,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. 「어선법」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(해당 시험업무에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) 3.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(「국가표준기본법」 또는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교정·검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합니다)의 목록, 사양서 및 교정·검정을 받은 기기의 관리계획서 4. 시험·검사기관 인정서(「어선법 시행령」 제4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) 5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·장비이용계획서 가. 「어선법 시행령」 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) 시설 또는 장비의 임차사유 2)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종류 3) 임차하려는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장비의 제조자의 명칭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나. 「어선법 시행령」 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)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 사유 2) 의뢰하려는 시험항목 3) 의뢰하려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, 소재지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6. 「어선법 시행규칙」 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인정서(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